

Muan Web Contents

2025년 01월 24일 11시 30분



목차

목차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
신청자격	3
지원범위 및 내용	3
지원금액	3
제출서류	4
추가 제출 서류	4
지원신청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아동학대신고센터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양육지원금(출산장려금) 지급안내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가임력검사)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정관 ·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시술횟수

- 출산당 25회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 · 중단 시)에만 지원 가능
 -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 · 중단 시 지원 :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시 난임시술 횟수차감없이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의학적 판단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지원금액

(단위 : 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지원내용(연령구분폐지)
지원기준(신설)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연령구분 폐지(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 적용) * 24.11.1 이후 적용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같음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추가 제출 서류

■ 사실혼 필요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지원신청

- 보건소 및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 450-4686

MUAN

Web Contents

 무안군